

적합성 승인서

(앞쪽)

소유자	법인명	전화번호
	대표자명	사업자등록번호
	소재지	법인등록번호
적합성승인번호		
차명		
차대번호		
운행 목적·용도		
운행 최고속도		
운행 범위		
기타 사항		

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제6항, 제35조의5제5항·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적합성 승인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 직인

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주의사항

-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자동차가 자율주행자동차라는 사실을 도로의 다른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.
- 적합성 승인을 받은 조건·기간을 위반하거나 그 운행 목적·용도 및 범위 외에서 운행하는 경우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제2항제3호·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이 취소되거나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7제3항에 따른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라 2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[illegible]